

보도일시

(인터넷) 2024. 1. 19.(금) 06:00,

배포 2024. 1. 18.(목) 14:00

(지면) 2024. 1. 19.(금) 석간

[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돌보기]

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

- 1월 22일부터 연중 실시,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,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(월)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.

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.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·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, 총 27,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.

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,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.

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,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

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.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연안해운과	담당자	사무관	이종훈 (044-200-5733)

□ 지원 대상

-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*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로서,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

*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하며,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

□ 신청 요건

- 지원대상자가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*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

*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유) 제외(배송비 미부과)

- 지원대상자가 「우편법」 제14·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(추가 배송비 없음)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(화주)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

□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

- (지원금 신청)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택배비 지불·이용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

* (지원금) 택배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또는 최대 3천원(지자체별 상이),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(예산 소진시까지)

- (대상자 확정) 읍·면·동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, 신청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지급대상자로 확정

□ 지급시기 및 방법

- (지급시기)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 지급
- (지급방법)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